제424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등〉

▣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9, 2208242, 2208243, 2208245, 2208246, 2208247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Ⅰ. 개요 ·····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Ⅱ. 검토의견: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등 ····· 8

※ 참고자료 ····· 25

Ⅰ. 개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2. 18.

3) 회부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따른 예우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2. 18.

3) 회부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2. 18.

3) 회부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5·18민주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5. 2. 18.

3) 회부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및 제80조의2).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2. 18.

3) 회부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39조의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2. 18.

3) 회부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31조).

Ⅱ. 검토의견: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등

□ 6건의 개정안[1]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3(장례서비스) <신 설>	제68조의3(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③ 제2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2항----------.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의2. ---------- 따른 고독사 예방 및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

에 따라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3. (생 략) ② ~ ④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8. ~ 14. (현행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의3(장례서비스)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	제89조의3(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5·18민주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 ④ 제2항----------

훈부장관이 정한다.	----------.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0의3. ---------- 따른 고독사 예방 및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3(장례서비스) <신 설>	제75조의3(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2항----------.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① ----------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0의2. (생 략) 10의3.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 13. (생 략) ② ~ ④ (생 략)	----------. ----------.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 따른 고독사 예방 및 ----------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8(장례서비스)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2항----------.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2. -------- 따른 고독사 예방 및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7(장례서비스) <신 설>	제8조의7(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2항----------.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의2.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7의2. -------- 따른 고독사 예방 및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라 함)이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시행(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하여는 현행 보훈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2]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고독사 예방 협의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보훈 관계법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양지원,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등 관련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 근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은 그 특성상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요구됨에도, 현행 보훈 관계법률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1인 가구, 경제적 취약가구,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가유공자는 이러한 지표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표 1] 고독사 발생 현황 특징 및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

구분	고독사 발생 현황 특징*	국가유공자 지표
가구형태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독거비율 27.4% (일반국민 15.1%)
경제	86.3%가 각종 사회보장 지원을 받은 이력을 보유한 경제적 취약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1인가구 비율 58.2%
성별	높은 남성 비율 남성(84.2%) > 여성(15.8%)	국가유공자 성별 구성비 남성 98.7%, 여성 1.3%
연령	높은 중·장년층 비율 50대(29.8%), 60대(29.3%), 70대(12.6%)	국가유공자 중 70대(45.4%), 80대(23.5%)

*2017년~2021년 고독사 발생 현황 (2022. 12. 14. 발표)
**2023년 법 개정(6.13.) 전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의 정의 요소에 "홀로 사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기 고독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구형태가 '1인 가구'였어야 함.

자료: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국가보훈부

○ 현재, 국가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부처간 자료 공유 등 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표 2] 국가유공자 고독사 관리대상 현황

(2024년 11월 기준)

고독사 관리대상	독거가구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미수혜
8,522명	주민등록상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가복지서비스, 요양급여 미수혜
	157,752명	9,654명	8,522명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유공자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존 국가보훈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화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국가보훈부가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국가유공자 중 다수는 군 관련 유공자로, 참전으로 인한 전쟁 트라우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 등 다른 유형 집단과 차별화된 특수성이 있어 고독사 위험군 판단을 위한 지표부터 예방 프로그램까지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있음.[3)]

○ 또한, 지방 보훈관서, 지역별 보훈회관, 유공자 유형별 보훈단체 등 국가보훈부의 기존 조직 및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국가보훈부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3)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을 판단함에 있어 전쟁 등 트라우마 여부, 보훈회관 등 복지시설 방문 횟수 등을 자체 판단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유사한 경험을 지닌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매칭을 통한 관계형성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국가보훈부, 2025. 3.).

○ 참고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소관 부서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표 3] 해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동향

구분	정책 수립	주요 정책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VA) 중심 정책 수립	· No Veteran Dies Alone(참전유공자 사망 직전 72시간 이내 자원봉사자 방문), · Peer Support Programs(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유공자와 연계 지원) 등
영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략 (THE STRATEGY FOR OUR VETERANS) 수립	·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국가유공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관계 구축과 공동체와 연결 지원) 등
호주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중심 정책 수립	· 맞춤형 국가유공자 돌봄 프로그램(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 지원) · 커뮤니티 방문자 제도(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를 관심사, 취미, 배경이 유사한 지역 내 사회적 그룹과 연결)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고독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므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자료 요청 권한 신설도 함께 입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

부장관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개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지 않아 해당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도 해당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사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4)]

[표 4] 고독사예방법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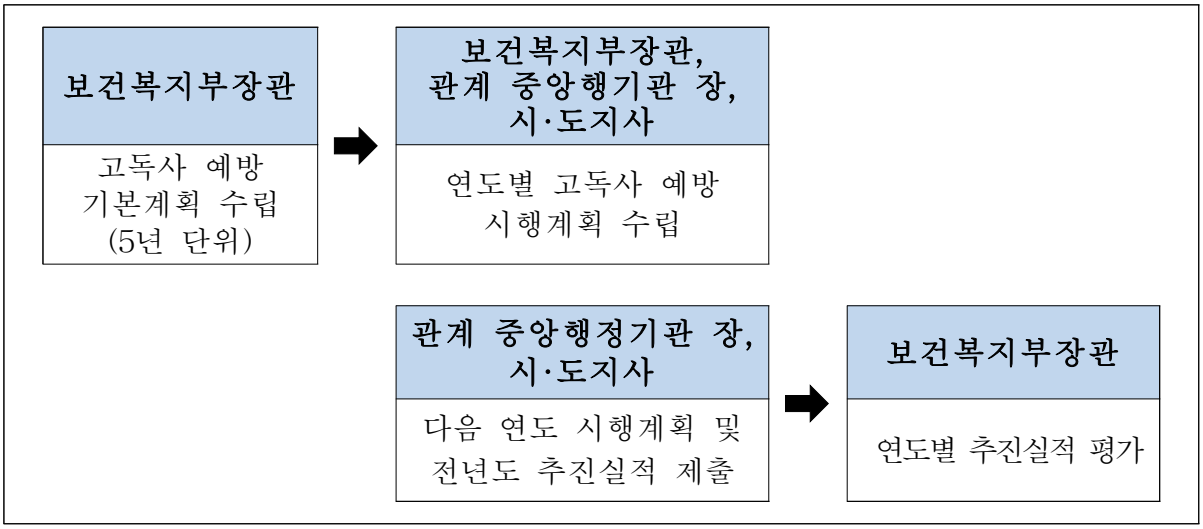

4)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교육부·문체부·고용부·행안부·여가부 차관, 서울시·부산시 부시장, 경찰청·소방청 차장 이상 총 10인임.

○ 또한,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자료 요청 권한과 함께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5)]

[표 5] 고독사 정보시스템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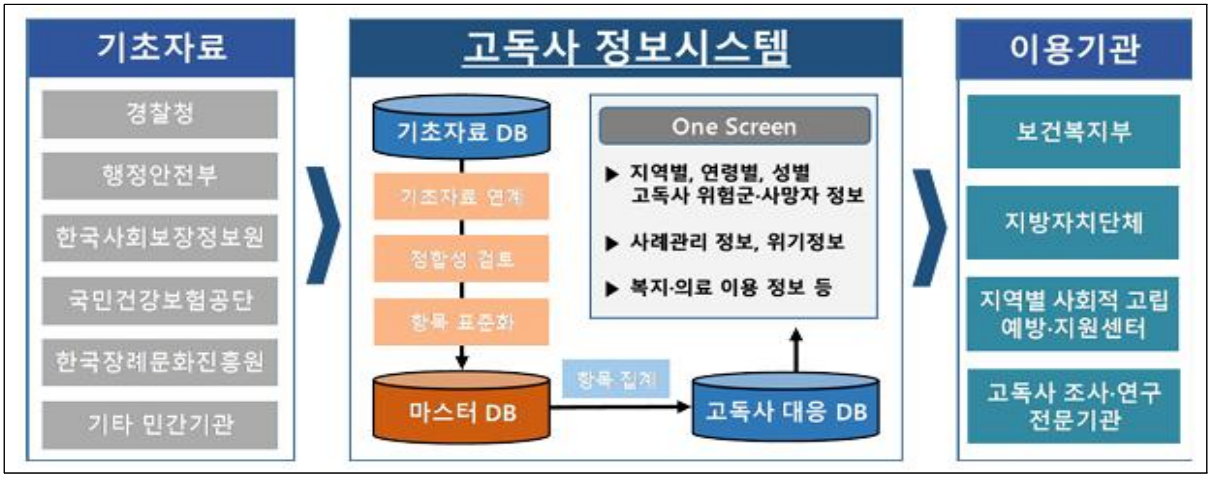

자료: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 그 밖에,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중 중첩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두텁게 보호하되, 불필요한 중복 사업은 지양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6)]

---

5)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6)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은 없는 실정임.

[표 6]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 간 유사지원 내용

구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국가보훈부)
사회관계망 형성	문화기반시설 이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등 참여 유도, 지역공동체 건강 음료 생산·배달	국가유공자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도시락 배달
IT 활용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안부전화, 실시간 원격검침·스마트기기 활용	AI 기반 자동 안부확인 전화,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등 통한 안부확인

자료: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의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된다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지역별 · 연령별 독거 국가유공자 현황

(2024년 1월 기준)

지방보훈관서명	독거가구	연령별 독거가구			
		65세 미만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합계	**155,344**	**26,916**	**43,604**	**48,982**	**35,842**
서울	12,511	2,350	3,318	4,117	2,726
서울남부	5,880	1,083	1,508	2,034	1,255
서울북부	7,116	1,137	1,927	2,527	1,525
경기남부	9,764	1,958	2,633	2,959	2,214
인천	10,860	1,906	2,974	3,504	2,476
경기북부	10,106	1,775	2,686	3,417	2,228
경기동부	7,070	1,249	1,935	2,336	1,550
강원서부	3881	733	1,028	1,249	871
강원동부	3,293	527	969	1,025	772
부산	11,786	1,726	3,692	4,159	2,209
울산	3,391	644	1,127	1,055	565
경남동부	6,735	1,249	2,165	1,977	1,344
경남서부	4,030	637	1,064	1,164	1,165
제주	2,523	437	679	642	765
대전	5,590	1,095	1,637	1,639	1,219
충남서부	2,721	351	704	899	767
충남동부	2,776	593	769	815	599
충북남부	3,103	532	908	858	805
충북북부	2,265	359	667	678	561
대구	12,754	2,183	3,871	3,518	3,182
경북북부	2,944	355	725	818	1,046
경북남부	4,306	653	1,284	1,311	1,058
광주	7,399	1,458	2,064	2,244	1,633
전남동부	3,280	541	883	1,011	845
전남서부	2,247	331	610	750	556
전북동부	3,619	557	892	1,145	1,025
전북서부	3,394	497	885	1,131	881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25.3월, 국가보훈부)

○ **(위험군 발굴)** 국가유공자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구분	기 존	개 선
관리대상	65세 이상+1인가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미수혜자(6,679명)	전 연령+1인가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미수혜자(8,522명)
분류기준	3단계 (고위험군-위험군-의심군)	4단계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판단지표	장애 정도	장애 정도 +국가유공자 특성+사회적 관계
대상발굴	통계 기반	판단지표 기반 전수조사

○ **(맞춤형 서비스 지원)** 대상별 고독사 예방프로그램 제공

위험군	대상별 맞춤형 예방프로그램
고위험군	▸ **고독사 예방 집중관리** ▪ (민관협업) AI기반 문열림센서·스마트플러그 지원 **「AI 히어로 케어」**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한 안부확인서비스 **「영웅 안부배달」** ▪ (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보훈요양시설** 입소 지원 ▪ (복지부·지자체) 일반국민 대상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우선지원**
중위험군	▸ **민관협업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AI 기반 자동안부확인 전화 **「보보안심콜」** ▪ 연탄은행 등 민간기관 협업 도시락 배달·식사지원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저위험군	▸ **일상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보훈회관별 민관협업을 통한 **「보훈문화회관」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제도적 기반 구축)**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근거 마련

구 분	내 용
부처간 협업	▪ 10개 부처 차관급 협의기구 **「고독사 예방협의회」**를 통한 협업인프라 마련
민관협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업, NGO 등과 협업**하여 **자원봉사자-국가유공자간 매칭**을 통한 안부확인, 물품지원 등 고독사 예방
법적기반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 추진

참고 3 해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동향[7]

□ 미국

○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VA)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 일반국민과 다른 국가유공자(Veterans)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고려

* 특수한 조직문화를 경험, 전쟁 트라우마(PTSD) 등 정신적 질환 多, 사회적 예우 대상

-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직전 자원봉사자 등이 방문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존엄한 죽음을 보장

- 지역공동체 공간,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결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

* 국가유공자 센터(Vet Center), 동료 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s) 등

정책명	주요내용
No Veteran Dies Alone	참전유공자 사망 직전 72시간 이내에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참전용사를 방문하여 마지막까지 예우
동료 지원 프로그램 (Peer Support Programs)	국가유공자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공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립감 극복
국가유공자 상담 서비스 (Veterans Crisis Line)	심리적 위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24시간 상담창구 운영
제대군인 센터 운영 (Vet Centers)	전역 군인이 민간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상담, 커뮤니티 내 자원연결 등 지원

□ 영국

○ 군인 헌장(The Armed Forces Covenant)을 제정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합의

7)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략(THE STRATEGY FOR OUR VETERANS)'을 수립하여 조직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등을 추진

핵심과제	주요내용
조직 간 협업 (Improved collaboration)	조직 간(관계부처, 민간 등) 개선된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일관된 지원을 제공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국가유공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관계 구축과 공동체와의 연결을 지원
고용·교육·기술	국가유공자(제대군인)의 적정한 고용, 교육,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시민사회 내 생활	국가유공자의 월세,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공간 보장

□ 호주

○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중심의 정책 수립

○ 국가유공자의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업을 통한 지원

* 자택 돌봄서비스(Veterans' Home Care), 봉사자를 통한 지역사회 연결 지원(Community Visitor Scheme, CVS), 민간 재향군인단체(RSL Australia 등)와 협업

정책명	주요내용
맞춤형 국가유공자 돌봄 프로그램	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를 지원하는 단기 집중 사회지원 서비스
커뮤니티 방문자 제도 (Community Visitor Scheme, CVS)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를 관심사, 취미, 배경이 유사한 지역 내 사회적 그룹과 연결
공동체 간호 프로그램	가정 내 간호서비스, 약물 지원, 의학적 처지 등을 지원하여 자택에서의 존엄한 사망 보장